

의안번호	2213523
의 퇴 인	조정훈 의원
회 답 일	2025.11.24.
추 계 번호	25C5574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2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제2항)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의3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학생의 대안교육 수강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u>제1항 및 제2항에</u>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 <u>및 비용 지원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2	안 제10조의3 (대안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대안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대안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항) 그 밖에 대안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의2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0조의3 (대안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이용권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 실시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서, '25년 267개 기관이 등록·운영 중임
 - 대안교육 시설은 법적 지위, 설립 요건 등을 기준으로 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됨
 - 이 중 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기준제 정수요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보통교부금을 통해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경비가 지급됨
 - * [참고자료 1] 대안교육시설 비교
 - * [참고자료 2] 시·도교육청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 현행 「대안교육기관법」은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경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시·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5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예산으로 128억 4,300 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주요 지원 내용은 인건비,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임
 - * [참고자료 3] 시·도별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현황
 - 개정안은 대안교육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대안교육이용권 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 발행 금액 등 구체적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추계가 곤란함
- 개정안은 대안교육이용권 신청자의 요건, 발급에 관한 구체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대안교육이용권 신청자 요건이 기존 운영 중인 평생교육이용권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소득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움
 - 참고로, 교육부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장애연금 수급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함

-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 없음

Ⅳ. 작성자

-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1] 대안교육시설 비교

구분	공교육 내		공교육 내/외	공교육 외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중/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록) 대안교육기관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91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 시·도교육청 조례, 규칙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해당 없음
설립 목적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이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중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 (고등학교)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 체험, 인성 위주의 교육,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 교육 등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학교 부적응 문제 해소, 다양한 교육 구현 등 시설마다 다양
학력 인정 여부	인정	인정	원적교 학력 인정	학력 미인정 (취학 의무 유예)	미인정
학교 운영	「초·중등교육법」 상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상 중학교, 고등학교	해당 없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상 대안교육기관	해당 없음

구분		공교육 내		공교육 내/외	공교육 외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중/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록) 대안교육기관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학 교 운 영	시 설 규 제	○ 교사·옥외체육장 등에 대한 규정 존재	○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 기준면적 등에 대한 규 정 존재	○ 시·도교육청별 운영 지 침에 따라 상이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등록 기준 규정	○ 해당 없음
	설 립 절 차	○ (교육감) 인가	○ (교육감) 지정	○ (교육감) 지정	○ (교육감) 등록	○ 해당 없음
교육과정 운영		○ 학칙으로 규정	○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자율편성	○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자율편성	○ 시·도교육청의 등록기 준에 따라 자율편성	○ 시설별로 상이함
학생 선발		○ 학칙으로 규정	○ 학생 지원	○ 시·도교육청 위탁 운영 되어 자체적인 학생 선 발 불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현황		○ 52교(공립 24교/사립 28교)	○ (중학교) 22교(공립 7 교/사립 15교) ○ (고등학교) 26교(공립 6교/사립 20교)	○ 275개	○ 267교	○ 약 120여 개 ¹⁾

주: 1) 2024년 이루어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추정치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수시로 휴교, 폐교, 업종 변경 등 변동이 커 상
세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2024.10.), 13p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자료 2] 시·도교육청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4	10	7	8	13	11	2	1	7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6	9	6	11	12	7	9	267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 3] 시·도별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예산
서울	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 인건비,	6,057
부산	프로그램 운영비	196
대구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87
인천	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	420
광주	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	1,587
대전	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	115
울산	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	64
세종	프로그램 운영비	10
경기	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 도서 구입비	2,200
강원	프로그램 운영비	79
충북	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	175
충남	프로그램 운영비	32
전북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도서 구입비	135
전남	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 인건비, 도서 구입비	1,299
경북	프로그램 운영비	116
경남	프로그램 운영비	84
제주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263
합계		12,843

자료: 교육부